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 천 요 양 원

제3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7인으로 한다.(남, 여)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소개.
3. 지인 및 입소자의 보호자를 통한 모집

제3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4,5(치매)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만료 전에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알리도록 한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2,3,4,5(치매)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7. 본인부담금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의 개인부담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급여비를 면제한다.
-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2% , 8% 경감한다.

8. 월 이용료 부담액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비용안내] 와 같게 한다.

9.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시설은 이용 노인에 대한 이용료 외 기타비용부담액 (비급여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식사 재료비
- 나. 이. 미용서비스 (단, 자원봉사자 및 시설직원이 직접제공시 별도로 청구는 하지 않는다.
- 다.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라. 경관급 이용자에 대해 제공되는 유동식 및 기타비용을 실비로 청구한다.

제38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 ~ 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희망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

제39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4.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5. 입소자 건강진단서(결핵, 전염병 포함) 1부
- 6. 수급자 기능에 따른 비대체성 제재동의서(침대난간, 휠체어안전벨트)

7. 기타 본원이 어르신을 모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들

제40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1. 초기면접 : 시설은 초기 면접 시 입소자와 가족을 면담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 되면 시설은 보호자와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 안내 : 입소 계약을 하면 수급자의 권리, 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입소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제41조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1. 입소자의 의무(준수사항)

- 가. 다른 입소자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생활하기
- 나. 입소 시설은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 다. 입소 시설을 아끼고 잘 보존하기
- 라. 타 입소자에게 폭행, 폭언, 기타 규정을 잘 지키고 위반하면 강제퇴소가 가능
- 마. 개인 귀중품은 개인이 잘 관리하거나 보호자 또는 사무실에 맡겨야 함.
- 바. 기타 요양원 운영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한다.

2. 입소자의 권리

- 가. 개개인의 사생활 존중과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존중 받을 권리
- 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받을 권리
- 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 사.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
- 아.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자.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42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제4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바.수급자의 병원진료 및 입우너지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제4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시설 이용안내서, 급여계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 재료비 : 한끼 3,800 원

2) 간식비 : 하루 1,000 원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예약자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4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3)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 등의 제반경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상담을 통해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③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 옮겨가는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한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 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① 기관의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 ②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 ④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 ⑥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제49조 (계약의 해지)

- 다음의 경우 퇴소조치 및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가 감염병등의 이유로 감염위험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때 신원인수인과 합의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50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운영자가 요양원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소를 명하는 경우

제5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은 년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 실시하고, 소방안전점검은 필요 시 관리업체에서 자체점검을 년1회 실시 후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5. 반입제한 물품 및 소지 불가물품 : 시설에서는 전기, 화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입을 제한한다, 또한, 입소자의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 바늘 등 뾰족한 용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장기요양비용 안내

□ 본인부담금 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6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수가가 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 원)

등급	2025년 수가	2026년 수가
1등급	90,450	93,070
2등급	83,910	86,340
3~5등급	79,240	81,540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원)

구 분		본인 부담금 (30일 기준)			
		일반 (20%)		경감 (12%)	경감 (8%)
		현행	2026년 1월~	2026년 1월~	2026년 1월~
본인 부담 금	1등급	542,700	558,420	335,052	223,368
	2등급	503,400	518,040	310,824	207,216
	3~5등급	475,200	489,240	293,544	195,696
비 급 여	식재료비 (간식포함))	1일 : 1식 3,800원 3,800원 × 3회 = 11,400원 / 간식 1,000원 × 1회 = 1,000원 1일 = 12,400원 × 30일 = 372,000원			
합 계	1등급	884,700	930,420	707,052	595,368
	2등급	845,460	890,040	682,824	579,216
	3~5등급	817,440	861,240	665,544	567,696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년 1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URL로 보내드리오니 서명 부탁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변동없음)

목천요양원